

특허청 공고 제2019-88호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계획 공고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8-23호) 제22조에 의거,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특 허 청 장

'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과업내역서

2019. 4.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과

I. 과업개요

1. 과업명 : '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2. 31.

3. 주요 내용

————— < 사업 주요내용 > —————

-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개요
 -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조사의뢰 및 검수절차
-

II. 과업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명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사업목적

- UAE 특허심사대행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처리 및 UAE 심사대행 품질향상을 지원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2. 31.

사업예산 : 565백만원

2. '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의뢰물량

전문기관	의뢰물량	계약 금액* (백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107건	565

* 실제 계약체결시 계약 금액 변동 가능

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는 첨부1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 첨부1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 ※ 첨부2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조사의뢰 및 검수절차
- ※ 첨부3 :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계약특수조건

□ 제출방법: 방문 제출(기한 내 도착에 한하여 인정)

[첨부 1]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우편번호 : 302-701)
- 문의 : 특허심사기획과 이경철 사무관, ☎ (042) 481-5655
특허심사기획과 이선기 주무관, ☎ (042) 481-8413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1부 및 사업수행계획서가 수록된 CD 1매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및 조사인력의 서약서

4. 기타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

2019. 4.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과**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목차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컨대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계약 이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전문기관은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2. 사업수행계획서 목차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I.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력현황
II. 2019년도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선행기술조사에 활용 가능한 검색DB 현황 1.1. 자체구축 DB현황 1.2. 외부 검색사이트 현황 1.3. 기타 자료 2. 조직 및 조사인력 현황 2.1. 신청기관의 일반 조직도 2.1.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담당 전담조직의 조직도 2.3. 조사인력 세부 현황 3. 조사인력 운영 계획 4. 보안관리 현황 4.1. 조사업무의 비밀준수 및 책임성 확보 대책 4.2. 미공개출원에 대한 보안대책 5. 조사품질관리 5.1.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수행방법 및 절차 5.2.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품질 관리체계 및 방법
III. 선행기술조사규정	* 선행기술조사규정
IV. 기타	* 기타 심사관 지원 방안 등
V. 별첨	1. 법인등기부등본 2. 임원 및 조사인력의 서약서(1부만 제출) 3. 증빙서류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가. 일반현황

- 신청기관 설립 및 이후의 연혁 제시
- 신청기관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최근 3년간 경영실태 제시
- 신청기관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 제시

나. 2019년도 사업추진 세부계획

□ 선행기술조사에 활용 가능한 검색DB 현황

- 자체구축 DB 현황
- 외부 검색 사이트 현황
 - * 상용 사이트 및 무료 사이트를 구분하여 기재
- 상기 언급한 자료 외에 선행기술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료
 - * 활용 가능 검색DB 현황에 중국문헌(특허 공개 전문형태)의 포함 필수

□ 신청기관의 조직 및 조사인력 현황

- 신청기관의 일반 조직도
-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담당 전담조직의 조직도
- 조사인력 세부 현황
 -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담당 전담조직에 속하는 조사인력의 성명, 소속(팀명 등), 직급(직위), 학력 등을 기재

성명	기술 분야	소속	직급 (직위)	입사 연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관련내용 증빙을 위해 학위증명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보안관리 현황

- 특허심사대행업무의 비밀 준수 및 책임성 확보 대책
 - 보안관리지침, 관련 규정 등
 - * 예)특허법에 의한 공무원 의제규정, 비밀준수 서약서 등
- 미공개 출원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통신시스템 및 특허심사대행사업 수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보안장비 및 보안대책
 - 보안관리 전담조직, 임·직원의 보안관리 수행체계
 - * 관련 내용(보안시설, 잠금장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선명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 첨부 필요
- 통제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자 관리 등 관리적 보안대책, CCTV·출입 통제장치 등 물리적 보안대책
 - * 통제구역 : 특허청 업무망 연결 PC 위치 구역 및 VPN실

□ 조사항질관리

- 특허심사대행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 특허심사대행업무 흐름도(내부절차) 및 수행방법
 - 일정관리 계획(의뢰 및 납품, 조사방법, 자체 검수 등)
- 심사보고서 품질 관리체계 및 방법
 - 조사·심사 보고서의 정확성 확보 및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
 - 조사팀장의 물량 배분, 교육·지도, 자체 검수 등 품질 관리방안

다. 선행기술조사규정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행기술조사규정

라.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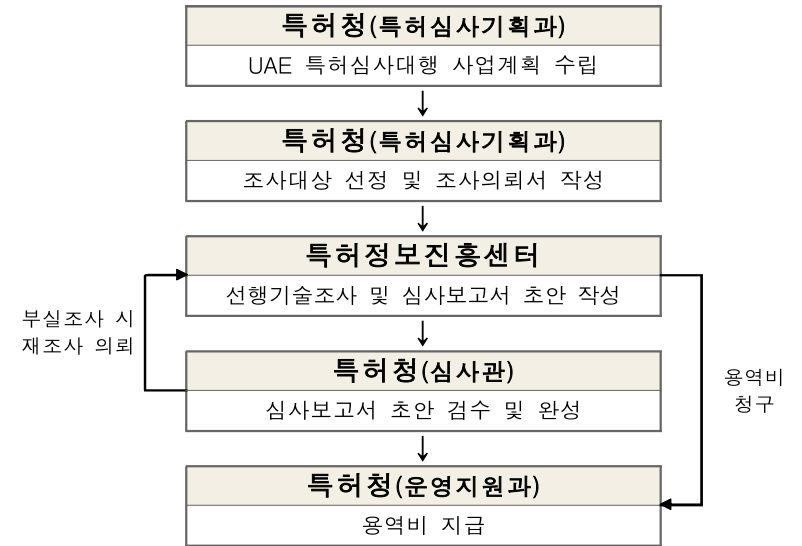
- 이미 언급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이 심사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심사관 지원방안 등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조사의뢰 및 검수절차

2019. 4.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과

I. 사업추진체계



II. 조사의뢰

1. 조사계획의 수립

- o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연간 조사물량을 결정하여 심사관(UAE 특허심사대행 전담 인력)과 특허정보진흥센터에 통보
- 심사관 및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통보된 계획 물량에 따라 조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

2. 조사의뢰 대상 출원의 선정 및 조사의뢰

- o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매월 계획 물량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사 의뢰서』를 전문기관에 통보
- o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건수 및 목록을 지정하여 조기납품을 요구할 수 있음

3. 출원의 내용확보

-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출원의 내용을 확보
 - 특허심사기획과에서 전용선(or 이메일)을 통해 수령
(미공개 전자출원의 경우 별도의 보안구역 및 장비(VPN)를 통해 보안지침에 따라 수령)

III. 선행기술조사 및 조사·심사보고서 작성

1. 조사자의 지정

-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으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조사물량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 조사원의 지정 및 교체시 다음 사항 고려
 - 조사원의 종래의 선행기술조사 담당 기술분류
- 복합기술의 경우, 관련 기술분야를 전공한 복수의 조사자가 공동으로 조사 가능
 - 조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자 성명을 모두 기재

2. 조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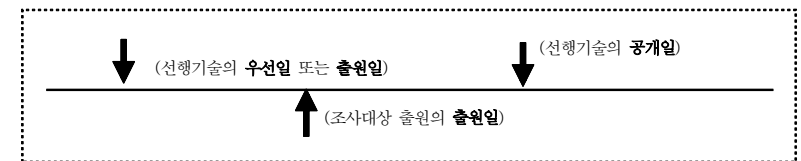
- 한국 특허·실용신안공보(공개, 공고)
- 일본 특허·실용신안공보(공개, 공고)
- 미국특허문헌, 유럽특허청(EPO) 특허문헌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공개특허문헌(이하 "WO문헌"이라 한다)
- 중국 특허·실용신안공보(공개)
- PCT 최소문헌 및 논문 등 비특허문헌

3. 조사방법

- 선행기술조사는 전산검색(전산DB, CD-ROM)과 매뉴얼 검색 병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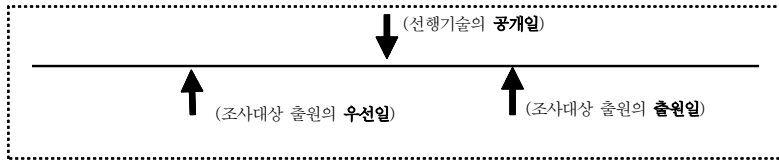
4. 조사보고서 관련문헌 기재요령

- "X" :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항이 동일하거나, 양자의 차이가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
- "Y" :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해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 2 이상의 문헌 결합이 당업자에게 자명하여야 함
 - 인용문헌에는 당업자에게 이들 문헌이 결합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함(명시적일 필요는 없음)
- "A" : 해당 문헌이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으나 기술현황을 보여주는 경우
- "E" : 조사대상 출원의 출원일(우선일이 아님)보다 이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을 가지나 출원일 이후 공개된 문헌(출원일 후 공개로 조사보고서의 특이 문헌에 해당 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I" : 우선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공개일 기재가 없는 간행물의 공개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 "O" : 회의록(구두개시, 공용) 등 비서면 개시를 언급하고 있는 문헌. X,Y,A 기호와 함께 사용(OX, OY, OA)(조사보고서의 선행기술을 구성)

- “P” : 공개일이 출원일보다 선행하나 우선일보다 후인 문헌 X,Y,A 기호와 함께 사용(PX,PY,PA)



- “T” : 출원일 또는 우선일 후 공개, 발명의 이해에 유용한 문헌을 표시
- ※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서에 인용되고 조사절차에서 언급된 문헌 : X, Y, A로 관련도를 기재하고 “관련 문헌”에 “본 출원에서 인용된 문헌임”을 기재함

5. 조사 절차 및 내용

□ 조사보고서

- 조사보고서 종합 기재
 - 출원 서지적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당 항목에 체크 및 기재
 - 요약서 및 도면 관련사항 작성
- 조사보고서 검색 결과 및 관련 문헌 기재
 - (항목 A) 본원 출원 대상의 확정분류 IPC를 기재
 - (항목 B) 검색된 인용문헌의 분류를 기재
 - (항목 C) 인용문헌의 관련도를 기재
- ※ 관련도는 4. 조사보고서 관련문헌 기재요령 참조
- 관련문헌 설명
- 불특허 사유, 단일성, 및 요약서 작성
 - (Box I) 조사제의 대상에 해당하거나 청구범위가 불명료하여 발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기재
 - (Box II) 1군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관은 발명의 단일성 위배사유를 기재
 - (Box III) 요약서가 부실하게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이 직접 작성
- 패밀리 기재(Patent family annex)
 - 인용문헌이 특허 및 실용신안인 경우에는 인용문헌의 패밀리를 기재
- 추가시트 기재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종합 기재
 - 출원 서지적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당 항목에 체크 및 기재
- 심사보고서 보정사항(Box I) 및 우선권 기재(Box II)
- 불특허 사유에 대한 의견(Box III)
- 단일성 기재(Box IV)
- 특허성에 대한 견해 기재(Box V)
 -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인용문헌에 대하여 본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견해 제시
- 특이문헌 기재(Box VI)
 - 출원 대상 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실용신안 인용문헌에 대해 기재
- 출원의 기재방식 또는 내용상의 흠결, 청구범위 불명료 기재(Box VII)
 - 명세서,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위반, 즉 출원 대상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불명료 사항이 아닌 형식적인 흠결
 - 출원 발명에 대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의 기술적 특징이 불명료한 경우 본 기재란에 불명료 사항을 기재
- 추가시트 기재

IV. 조사결과와 납품

1. 조사결과 납품

-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UAE 조사보고서』 및 『UAE 심사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사 납품서』를 서면이나 특허청이 지정하는 형식의 전자데이터인 CD-ROM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

- 『UAE 조사보고서』 및 『UAE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색전략』 및 『구성대비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2. 납품기간

- 납품은 용역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납품은 계약기간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 아울러, 의뢰일자가 빠른 순으로 조사결과를 수시로 납품하여야 함

3. 납품기간 연장

- 조사대상이 난해하여 납품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등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자는 사전에 담당심사관 및 특허심사기획과와 협의를 거친 후 연장신청 가능
- 이 경우 연장된 일수는 조사이행 납품기간으로 보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V. 검수

1. 검수의 개요

- 검수의 종류
 - 심사착수 전 검수 : 월별 의뢰건의 심사보고서 제출후 실시하는 검수
 - 심사착수 후 검수 : UAE 특허심사대행 전담 심사관에 의한 검수
- 검수책임자 : 특허심사기획과장
- 검수 대상 : 납품된 물량 전체

○ 검수내용

- 납품 물량확인
- (선행기술검색) 선출원(or PCT 국제조사보고서) 심사이력 확인 여부, 인용문헌과 본원발명의 유사 여부 등
- (조사보고서) 작성양식 준수 여부, 인용문헌의 관련도 기재 등
- (심사보고서) 작성양식 준수 여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 기재불비 및 기타 거절이유 기재여부 등
-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검수요령

□ 심사착수 전 검수

- 특허심사기획과장은 『UAE 조사보고서』 및 『UAE 심사보고서』의 납품 물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수 내역서』에 기재하여 특허정보진흥센터에 통보
- 검수 기일 :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

□ 심사착수 후 검수

- 심사관은 『UAE 조사보고서』 및 『UAE 심사보고서』를 검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UAE 심사보고서 품질평가표』를 작성하고, 해당 평가항목을 체크
- 품질평가표 작성일 : 검수 직후

VI. 불충분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1. 불충분한 조사 확인 시 조치

- 심사관은 『UAE 조사보고서』 및 『UAE 심사보고서』의 결과가 부실한

경우 조사원에게 재조사를 의뢰함

- 출원서류별로 재의뢰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1차 반송은 10일, 2차 이후 반송은 5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함

2. 교육요구

-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관(UAE 특허심사대행 전담)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교육을 지시할 수 있음
-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은 특허청으로부터 교육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UAE 특허심사대행 전담) 및 특허심사기획과에 보고

VII. 용역비 지급

-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은 특허심사기획과의 심사착수전 검수결과에 따라 특허심사기획과로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
- 운영지원과장은 특허심사기획과로부터의 “대금지급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

< 별지 제1호 서식 >

SEARCH REPORT

NAME OF THE EXAMINATION OFFICE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pplication No. UAE/P/ (10 fonts(볼드체, 자동입력))	Application filing date 10 fonts(볼드체)	(Earliest) Priority Date 10 fonts(볼드체)
Applicant 10 fonts(볼드체)		
<p>This search report consists of a total of __ pages.</p> <p><input type="checkbox"/> It is also accompanied by a copy of each prior art document cited in this report.</p> <p>1. <input type="checkbox"/> Certain claims were found unsearchable (see Box I).</p> <p>2. <input type="checkbox"/> Unity of invention is lacking (see Box II).</p> <p>3. <input type="checkbox"/> The application contains disclosure of a nucleotide and/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 and the search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equence listing.</p> <p><input type="checkbox"/> Filed with the application.</p> <p><input type="checkbox"/> Furnished by the applicant separately from the application.</p> <p><input type="checkbox"/> but not accompanied by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did not include matter going beyond the disclosure of the application as filed.</p> <p>4. With regard to the title,</p> <p><input type="checkbox"/> the text is approved as submitted by the applicant.</p> <p><input type="checkbox"/> the text has been established by this Office to read as follows:</p> <p>10 fonts</p> <p>5. With regard to the abstract,</p> <p><input type="checkbox"/> the text is approved as submitted by the applicant.</p> <p><input type="checkbox"/> the text has been established by this Office to read as if it appears in Box III.</p> <p>6. The figure of the drawings to be published with the abstract is :</p> <p>Figure No. __</p> <p><input type="checkbox"/> as suggested by the applicant.</p> <p><input type="checkbox"/> because the applicant failed to suggest a figure.</p> <p><input type="checkbox"/> because this figure better characterizes the invention.</p> <p><input type="checkbox"/> none of the figures.</p>		

SEARCH REPORT

Application No. **UAE/P/ 12 fonts(볼드체, 자동입력)**

A. CLASSIFICATION OF SUBJECT MATTER		
According t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10 fonts		
B. FIELDS SEARCHED		
Minimum documentation searched (classification system followed by classification symbols) 10 fonts		
Documentation searched other than minimum document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documents are included in the fields searched Korean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Japanese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Electronic data base consulted during the search : eKOMPASS(KIPO internal) 10 fonts		
C.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Category	Citation of document, with indic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relevant passages	Relevant to claim(s) No.
10 fonts (가운데 정렬)	10 fonts	10 fonts (가운데 정렬)
<input type="checkbox"/> Further documents are listed in a continuation Box C. <input type="checkbox"/> See patent family annex.		
<p>* Special categories of cited documents:</p> <p>"A" document defining the general state of the art which is not considered to be of particular relevance</p> <p>"E" earlier application or patent but published on or after the filing date</p> <p>"L" document which may throw doubts on priority claim(s) or which is cited to establish the publication date of another citation or other special reason (as specified)</p> <p>"O" document referring to an oral disclosure, use, exhibition or other means</p> <p>"P" document published prior to the filing date but later than the priority date claimed</p> <p>"T" later document published after the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and not in conflict with the application but cit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r theory underlying the invention</p> <p>"X"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novel or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taken alone</p> <p>"Y"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combined with one or more other such documents, such combination being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p> <p>"&" document member of the same patent family</p> <p>Concerning enclosed non-patent literature: This is a free copy – for personal use only. Transmission to a third party is explicitly forbidden.</p>		
Name and mailing addres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ov. Complex 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Patent Examiner Name : 9 fonts(볼드체)	Authorized officer Name : SEO, Eulsoo Title : Supervising Examiner Signature: & Seal:
Facsimile No. : +82-42-472-3473		

Exam. R. 1/2

SEARCH REPORT

Application No. **UAE/P/ 자동입력**

C (Continuation).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Category	Citation of document, with indic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relevant passages	Relevant to claim(s) No.
10 fonts (가운데 정렬)	10 fonts	10 fonts (가운데 정렬)

Exam. R. 1/3

SEARCH REPORT

Application No. UAE/P/ 자동입력

(Explanations)
10 fonts

SEARCH REPORT

Application No. UAE/P/ 자동입력

Box I, II & III

Box I. Observations where certain claims were found unsearchable (continuation of item 1 of first sheet)
This search repor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respect of certain claims for the following reasons:
<input type="checkbox"/> Claims No(s): 10 fonts(볼드체) because they relate to subject matter not required to be searched: 10 fonts
<input type="checkbox"/> Claims No(s): 10 fonts(볼드체) because a meaningful search in relation to them is not possible: 10 fonts
Box II. Observations where unity of invention is lacking (continuation of item 2 of first sheet)
Multiple inventions were found in this application, as follows: 10 fonts
Accordingly, this report only covers inventions set forth in claim(s). 10 fonts (볼드체, 2줄)
Box III. Text of the abstract (continuation of item 5 of first sheet)
10 fonts

SEARCH REPORT

Information on patent family members

Application No. UAE/P/ 자동입력

This annex lists the patent family members relating to the patent documents cited in the search report.
The members are as contained in the eKOMPASS(KIPO internal) file.
The Office is in no way liable for these particulars which are merely given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Patent document cited in search report	Publication date	Patent family member(s)	Publication date
9 fonts	9 fonts (가운데 정렬)	9 fonts	9 fonts (가운데 정렬)

Patent family annex

SEARCH REPORT

Information on patent family members

Application No. UAE/P/ 자동입력

Patent document cited in search report	Publication date	Patent family member(s)	Publication date
9 fonts	9 fonts (가운데 정렬)	9 fonts	9 fonts (가운데 정렬)

Patent family annex

Supplemental Box

In case the space in any of the preceding boxes is not sufficient.
Continuation of:

10 fonts

Supplemental Box

In case the space in any of the preceding boxes is not sufficient.
Continuation of:

10 fonts

EXAMINATION REPORT

NAME OF THE EXAMINATION OFFICE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pplication No. UAE/P/ (10 fonts(볼드체, 자동입력))	Application filing date 10 fonts(볼드체)	(Earliest) Priority date 10 fonts(볼드체)
Applicant 10 fonts(볼드체)		
<p>1. This is the first <input type="checkbox"/> second <input type="checkbox"/> third <input type="checkbox"/> examination report on this application.</p> <p>2. This report consists of a total of _ pages.</p> <p>3. This report contains indications relating to the following items:</p> <p>I. <input type="checkbox"/> Basis of the report(page Ex. R. 2/2)</p> <p>II. <input type="checkbox"/> Priority.....(page Ex. R. 2/2)</p> <p>III. <input type="checkbox"/> Non-establishment of opinion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page Ex. R. 2/3)</p> <p>IV. <input type="checkbox"/> Lack of unity of invention.....(page Ex. R. 2/4)</p> <p>V. <input type="checkbox"/> Reasoned statement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 citations and explanations supporting such statement.....(page Ex. R. 2/5)</p> <p>VI. <input type="checkbox"/> Certain documents cited.....(page Ex. R. 2/6)</p> <p>VII. <input type="checkbox"/> Certain defects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page Ex. R. 2/7)</p> <p>4. The search report used was serv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search report(s) used to prepare this Examination Report is(are)</p> <p><input type="checkbox"/> previous search report(s) <input type="checkbox"/> new search report</p>		
Name and mailing address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ov. Complex Daejeon, 189, Cheongsu-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Patent Examiner Name : 9 fonts(볼드체)	Authorized officer Name : SEO, Eulsoo Title : Supervising Examiner Signature: & Seal:
Facsimile No. +82-42-472-3473		

Exam. R. 2/1

EXAMINATION REPORT

Application No. **UAE/P/ 12 fonts(볼드체, 이하 자동입력)**

Box I. Basis of the report (See page Exam. R. 2/1)
<p>1. This report has been drawn on the basis of:</p> <p><input type="checkbox"/> the application as transmitted with the request from the UAE MOE</p> <p><input type="checkbox"/> the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as transmitted with the request from the UAE MOE</p> <p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with application of <input type="checkbox"/> amendment before the 1st report after transmission</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1st report</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2nd report</p> <p><input type="checkbox"/> the claim(s), <input type="checkbox"/> as transmitted with the request from the UAE MOE</p> <p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with application of <input type="checkbox"/> amendment before the 1st report after transmission</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1st report</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2nd report</p> <p><input type="checkbox"/> the drawings, <input type="checkbox"/> as transmitted with the request from the UAE MOE</p> <p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with application of <input type="checkbox"/> amendment before the 1st report after transmission</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1st report</p> <p style="margin-left: 120px;"><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the 2nd report</p> <p>2. The marked amendment(s) was(were) not accepted, since they have been considered to go beyond the original disclosure as indicated below.</p> <p><input type="checkbox"/> amendment before 1st report after transmission</p> <p><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1st report <input type="checkbox"/> amendment after 2nd report</p> <p>(observation)</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10 fonts(최소 6-7줄 이상)</p>
Box II. Priority (See page Exam. R. 2/1)
<p>1. <input type="checkbox"/> Accepted as mentioned on page Exam. R. 2/1 according to</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Request Form <input type="checkbox"/> Priority Certificate</p> <p>2. <input type="checkbox"/> All or part of priority claims are invalid as specified below:</p>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10 fonts(최소 4줄 이상)</p> <p>3. <input type="checkbox"/> Thus for the purposes of this report, _____ is considered to be the relevant date.</p>

Exam. R. 2/2

Box III. Non-establishment of opinion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See page Exam. R. 2/1)

The questions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appears to be novel,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to be non-obvious), or to be industrially applicable have not been examined in respect of:

- the entire application.
 claim(s) No(s). : 10 fonts(볼드체)

because :

- the application, or the claims No(s). _____ relate to the following subject matter which does not require search :

10 fonts(이유 기재, 7줄까지 기재 가능)

- the application, or the claims No(s). _____ are not amenable to a meaningful search as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up by UAE :

10 fonts

- Due to above mentioned reason, no search report has been established for claim(s) No(s).
 10 fonts(청구항 기재, 2줄)

Box IV. Lack of unity of invention (See page Exam. R. 2/1)

1. Multiple inventions were found in this application, as follows:

10 fonts

2. Consequently, the following parts of the application relating to claim(s) No(s). _____ were the subject of examination in establishing this report.

10 fonts(청구항 필요시 추가 기재, 2줄)

Box V. Reasoned statement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 citations and explanations supporting such statement (See page Exam. R. 2/1)

1. STATEMENT

Novelty (N)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YES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NO
Inventive step (IS)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YES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NO
Industrial applicability (IA)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YES
	Claim(s) _____ 가운데 정렬로 기재 _____	NO

2. CITATIONS AND EXPLANATIONS

10 fonts

(continuation of Box V.)
10 fonts

Box VI. Certain documents cited (See page Exam. R. 2/1)

1. Certain published documents

Application No. Patent No.	Publication date	Filing date	Priority date (valid claim)
-------------------------------	------------------	-------------	-----------------------------

10 fonts(볼드체)

2. Non-written disclosures

Kind of non-written disclosure	Date of non-written disclosure	Date of written disclosure referring to non-written disclosure
--------------------------------	--------------------------------	--

10 fonts(볼드체)

Box VII. Certain defects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See page Exam. R. 2/1)

10 fonts

Supplemental Box

In case the space in any of the preceding boxes is not sufficient.
Continuation of:

10 fonts

Supplemental Box

In case the space in any of the preceding boxes is not sufficient.
Continuation of:

10 fonts

UAE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검색전략

UAE 출원번호		출원일	
명 칭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기술분류(IPC)			

선출원의 검색결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구 분	관련도	문헌번호	청구항	인용문헌
PCT 국제조사보고서	X	US 8097275 B2	1-6	①
	Y	US 2156787 B2	4-6	
	Y	JP 2165546 B1	4-6	
미국 특허청	Y	US 6519732 B2	1-6	②
	Y	US 3169874 B2	1-6	

검색 DB	검 색 식		인용문헌
KOMPASS	1	((미용* 화장품* 코스메틱* cosmetic* 피부* 스킨*skin*) (하이드로겔* hydrogel* hydro-gel* ((하이드로 hydro) adj (겔* 젤* gel*))).cla. and (adhesi* tack* cling* cohesive* sticky*adher*) and (np700 np-700 np600 np-600))	③
	2	(미용* 화장품* 코스메틱* cosmetic*) and (adhesi* tack* cling*cohesive* sticky* adher*) and (하이드로겔* hydrogel* hydrogel*((하이드로 hydro) adj (겔* 젤* gel*))) and (np700 np-700 np600 np-600)	④
구글	1	"np700" OR "np600" OR "np 700" OR "np 600" cosmetic	

인용문헌 리스트	관련도	문헌번호	본원 청구항
	X	① US 8097275 B2	1-5
	Y	② US 6519732 B2	6
	Y	③ EP 1513889 B1	6
	A	④ KR 10-2011-0125026 A	1-6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Tel :
	성 명		Fax :
조사팀장	소 속	연락처	Tel :
	성 명		Fax :
			E-mail :

구성대비표

견해	신규성 Yes: 1-5, 11-15 No: 6-7(D1), 8-10(D2) 진보성 Yes: 11-15 No: 1-5(D1+D2), 6-7(D1), 8-10(D2) 산업상 이용 가능성 Yes: 1-15 No: 없음		
	본원요지	<input type="checkbox"/> 종래기술 - 본원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중 본원발명의 해결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종래기술을 요약 - 종래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 본원에서 밝히고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요약 <input type="checkbox"/> 해결방안 - 종래기술의 문제점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한 본원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 또는 수단을 요약	
청구항 구성대비			
청구항	본원 구성	D1 : 문헌번호	D2 : 문헌번호
		D1 요지 - D1의 기술분야	D2 요지 - D2의 기술분야
1	A	A'	
	B	B'	
	C		C'
	- 독립항의 경우 본원 구성을 누락없이 정확히 구성대비 해주어야 함 - 다만, 본원구성 기재는 심사관이 파악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 가능		○ 독립항 검토의견: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조사원이 채택한 논리를 기재하되, 심사에 참고할만한 사항도 기재가능 - 예1) 본원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동일점 - 예2) 차이점 도출이 용이한/곤란한 이유 - 예3) D1과 D2의 결합의 용이성/곤란성 - 예4) 기술용어의 설명 등
2, 3, 4	- 종속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는 항들을 묶어서 대비 가능 - 본원구성 기재는 심사관이 파악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 가능		

<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항목		평가	
		예	아니오
선행기술검색	- 인용문헌이 선출원의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선출원(or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심사이력을 확인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용문헌이 본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라 판단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서	- 조사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용문헌의 관련도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가 적절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재불비 및 기타 거절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수 또는 미흡 사항	[우수]		
	[미흡]		

< 별지 제4호 서식 >

()월 조사의뢰서(UAE 특허출원)

특허심사기획과

조사의뢰일 : 20

연번	IPC S/C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경로	조기납품 대상 및 납품 시기
1	G 11 B	UAE/P/0123/2008	2008-03-02	파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비고 : 면당 연번은 반드시 25번까지로 함

< 별지 제5호 서식 >

()월 조사납품서(UAE 특허출원)

특허심사기획과

조사의뢰일 : 20

조사납품일 : 20

연번	IPC S/C	출원번호	출원일	조 사 원
1	G 11 B	UAE/P/0123/2008	2009. 1. 1.	홍길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비고 : 면당 연번은 반드시 25번까지로 함

< 별지 제6호 서식 >

()월 검수내역서(UAE 특허출원)

특허심사기획과

검수완료일 : 20

연번	IPC S/C	출원번호	조사의뢰일	지체일수	납품일	조사원	특허심사 기획과장(인)
1	G 11 B	UAE/P/0123/2008	2014. 8. 1.	0일	2014. 8. 3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비고 : 면당 연번은 반드시 25번까지로 함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계약특수조건**

2019. 4.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과**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UAE 특허심사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사업의 수행)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계획』,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조사의뢰 및 검수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계약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계획』,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사업 조사의뢰 및 검수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19년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특허심사대행 의뢰)

“특허청”은 계약물량을 수시로 배분하여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UAE 특허심사대행을 의뢰한다.

제4조 (특허심사대행 범위 및 내용)

- ① “계약상대자”는 UAE 특허심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1. 미국특허문헌, 유럽특허청(EPO) 특허문헌,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공개특허문헌(이하 “WO특허문헌”이라 한다)
 2. 한국 특허·실용신안공보 (공개, 공고)
 3. 일본 특허·실용신안공보 (공개, 공고)
 4. 중국 특허·실용신안공보 (공개)

5. PCT 최소문헌 및 논문 등 비특허문헌

② “계약상대자”은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포함된 조사보고서 및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견해서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 (조사 및 납품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특허심사대행 의뢰물량을 의뢰일자가 빠른 순서로 수시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 납품건수 및 목록을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한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이 난해한 출원서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 완료한 특허심사대행 건에 대하여 『검색전략』, 『구성대비표』, 『조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서면 또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형식의 전자데이터로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출원서류별 관련 선행기술문헌은 원문으로 첨부하여 납품한다. 단, 원문이 “계약상대자”의 비소장 문헌일 경우 원문(전자문서 포함)이 입수되는 대로 즉시 납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UAE 특허심사대행 물량의 일부를 UAE 2차 심사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7조 (검수 및 제조사 의뢰)

① “특허청”은 납품된 심사보고서 결과를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착수전 검수”를 완료하고, 심사착수 직후 “심사착수후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행기술조사결과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은 “심사착수후 검수” 결과 심사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조사하여 제조사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사 결과를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사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용역대금 지급)

용역대금은 “특허청”의 “심사착수전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제5조 및 제7조의 납품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단, 제5조 2항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사원 대상으로 UAE 특허심사대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청”의 교육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를 “특허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과정은 물론 그 후에라도 UAE 특허심사대행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출원중의 발명 및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출원을 저장하는 전산시스템을 외부 전산망과 단절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특허청에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미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출원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임원 및 조사인력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로 조사원을 본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용문헌으로 활용할 미공개 출원이 조사대상 출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공개 출원에 관련되는 사항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지 말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신규 직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신규 직원이 용역사업과 관련된 비밀준수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특허청”이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감사 결과에 따라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용역물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⑨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보안 관리사항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보안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② 조사원은 계약기간 동안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제14조 (벌칙)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3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제15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에 관하여 특허법 제226조 및 제226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UAE 특허심사대행 수주 물량이 감소하여 계약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17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 계약수량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는 쌍방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준용하여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19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0년도 사업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익년도 계약체결 이후에 지급한다

【별표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p><가 등급> 특허청이 정한 비공개 정보</p>	<p>①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p>
<p><나 등급> 특허청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p>	<p>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p>
<p><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특허청 문서</p>	<p>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중간 및 최종산출물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특허청 내부 문서</p>

【별표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금지행위	벌칙
심각 위반	1. 특허청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출원정보 및 개인정보 나. 특허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정보 2.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특허넷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라. 특허청이 정한 목적 외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취소
중대 위반	1.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부적절한 방법으로 특허청 시스템 접속 또는 조작 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 나. 승인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 3. 제한구역 보안관리 소홀 가.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 출입문 열쇠 방치 다. 출입문 열쇠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라. 승인받지 않은 작업자의 출입 * 제한구역 : 특허청 전산센터 및 특허청이 지정한 제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 6월 및 6개월에 해당하는 계약물량 감소 • 6개월 후 보안점검 실시하여 동일사유 발생 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취소

구분	금지행위	벌칙
보통 위반	1.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특허청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안규정 위반 가. PC 봉인지 임의훼손 또는 보안USB 프로그램 임의해제 나. PC CMOS · 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다. 전산장비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 노출 3. 인원 보안관리 위반 가.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업 투입인력 교체 나. 출입증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 3월 및 3개월분 계약물량 감소 • 3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6월 및 6개월분 물량 추가감소 • 6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경미 위반	1.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 출입문 열쇠 방치 다. 출입문 열쇠의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라. 일일 보안점검일지 관리 소홀(미구비 또는 미작성) 3. 전산장비 보안관리 미흡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 실시 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 프로그램(웹하드, P2P 등)과 메신저 · 대화방 프로그램 사용 다. PC CMOS · 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 · 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패치 미 실시 바.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 ·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1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3월 및 3개월분 계약물량 감소 • 3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업무정지6월 및 6개월분 물량 추가감소 • 6개월 후 보안점검 후 동일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 1』

[시행 2018.06.26] [특허청훈령 제911호, 2018.06.06, 일부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 및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실용신안 서류, 심판·재심 등으로 계속중에 있는 서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2.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등록출원 서류, 심판·재심 등으로 계속중에 있는 서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3. 디자인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한 디자인 서류 4. 특허법 제41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서류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파일, 배치설계설정등록 신청인이 비밀보호 신청을 한 배치설계 도면 또는 사진 및 설정등록신청서 6. 발명진흥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 7.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금지 8.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9.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병역사항 및 금융거래정보(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1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 관련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정보 11.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12. 공무원성과평가등에 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급 공무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상여급 지급 내역 1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등과 관련된 외교 문서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을지연습, 보안,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위기관리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답변서·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위조상품 단속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단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변리사 시험출제 관리·시험위원 위촉·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시험채점(채점기준표, 성적부) 등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변리사 시험에 관한 정보 3. 변리사자격심의위원 인적사항·안건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정보 4. 변리사 징계 안건 및 결과, 징계위원 인적사항, 피징계자 신상 등 공개될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변리사징계위원회 운영 정보 5. 반도체배체설계 공모전 우수작 선정과정·평가위원·응모작품 등 공개될 경우, 우수작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p>6.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p> <p>7.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8.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9.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10.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1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12.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p>13. 그밖에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검토·의견교환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협의록·의사록,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 가능한 초안·검토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기획안이나 검토안 등</p>
<p>법 제9조 제1항 제6호</p>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고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p>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급여·경력·카드번호·사상·양심·종교 정보·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징계 및 민원처리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한다.</p>

<p>법 제9조 제1항 제7호</p>	<p>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행하는 위패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p>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p> <p>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	---

< 별지 서식1-1(사업수행시) >

서 약 서

본인은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법」 제226조(비밀 누설죄등) 및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의거,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 수행 및 미공개 출원명세서의 취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서식1-2(이·퇴직시) >

서 약 서

본인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등) 및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특허청 UAE 특허심사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서식2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이하 “특허청”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UAE 선행기술조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국제출원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채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특허청	계약상대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시 ○○구 ○○동 ○○번지
특 허 청 장	성 명 :
(인)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